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07호 2021. 9. 9(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6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7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8호[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9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0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1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2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3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4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5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6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6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9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0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2

공 고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124호[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54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133호[도시계획시설(소3-231호선 소1-3호선)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5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2, 행정71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위생과 번호 17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⑤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⑦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수립·시행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5조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⑦ 과징금 처분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⑩ 청문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⑫ 신상정보의 확인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별표 2의 징수담당관란 다음에 민원지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원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	---	--	--

별표 2의 사회복지과 번호 1 및 2를 각각 번호 2 및 3으로 하고, 복지지원과란과 사회복지과란을 통합하며, 부서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건소장 위임사항 정비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신고 사무 등 동장 위임사항 정비
-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 변동사항 등 정비

2.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별표 1)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별표 2)
-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 및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942” 를 각각 “942, 963, 963-1~963-71” 로 한다.

별표 2의 7란 다음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산동 57-2, 58, 59, 60-1, 61-1~4, 62, 63-1, 63-6, 63-12, 63-17~19, 66-2, 67, 67-1, 68, 69, 70-1~3, 71-1~7, 72, 72-1~2, 73, 73-1, 74, 74-1~2, 75, 75-2, 76-1~3, 77, 78-5, 81-2, 82-2, 82-4, 82-7, 83-2, 83-9, 83-12, 84-1~4 85, 86-1, 86-3, 86-5, 86-7~8, 86-13, 87-5, 87-8, 94-8, 95-2, 96-10, 1185-18, 1185-25, 1186-22, 1187번지(25,618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중산매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72필지(25,618m²)를 매곡동으로 편입(별표 1, 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

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은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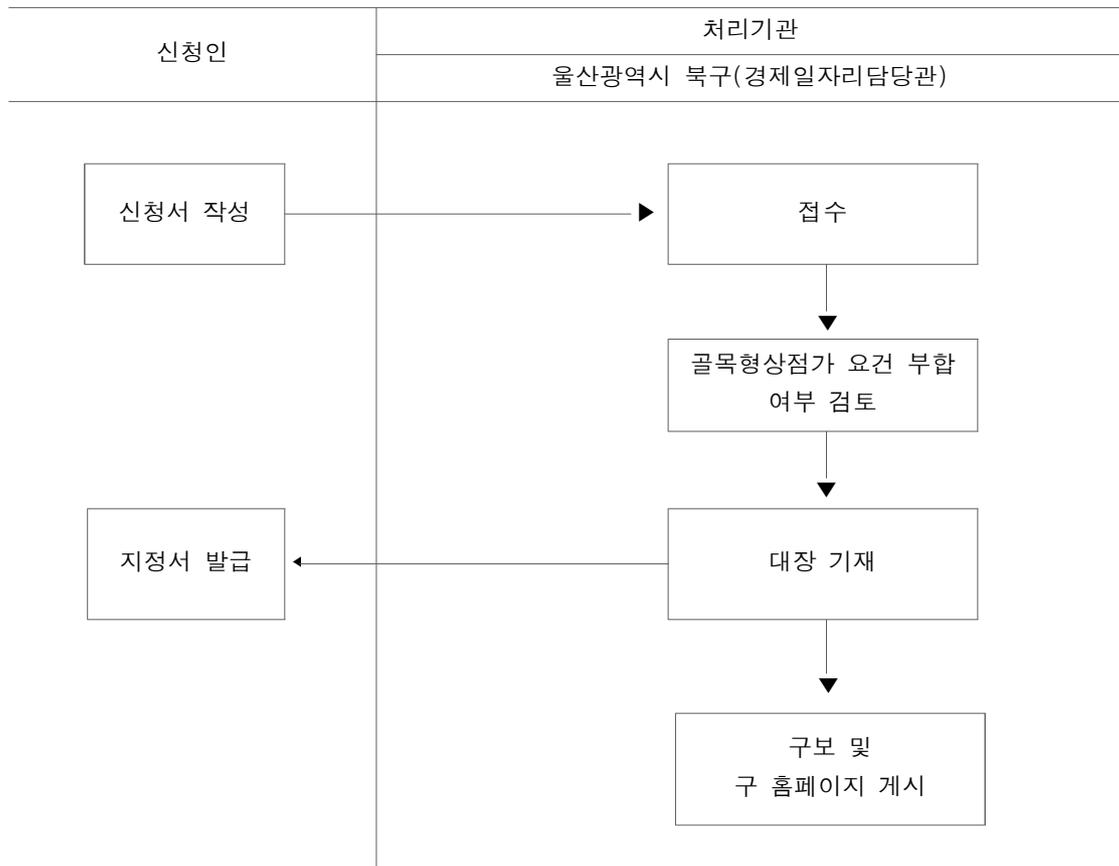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규모 : 토지 면적 m^2 , 점포 수 개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직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과 정의(제1조, 제2조)
-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제3조 ~ 제6조)
-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제7조)
- 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제8조 ~ 제1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징수절차와 강사의 자격”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라.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나.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4. 100분의 5 감면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 중 구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3(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

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 반환

제16조의4(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6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전액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복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본격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제16조의2)
- 나.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신설(제16조의3)
- 다. 평생학습관 사용 제한기준 신설(제16조의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1. 6. 30.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제5조)
- 나.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지키고,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신설(제12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로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9조 중 “제공하도록 한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인증심의)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 비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 비차별의 구체적 요소 명시(제4조제1호)
- 나.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명시(제4조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
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로,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을 “「도
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 신설(제2조의2)
 - 특정장소에 대한 영업장소 지정 신청 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9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정원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 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원 문화도시 조성

2. 주요내용

- 가. 각종 사업 검토, 자문을 위한 정원 전문가 활용 신설(제9조의2)
- 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구성 개정(제16조)
 - 위원 확대 : 9명 이내 ⇒ 25명 이내
 - 위 원 장 : 호선 ⇒ 부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교실”을 “강의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를 “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 개정(제5조)
-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제5조의2)
- 다.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 일부 삭제(제13조제4항)
- 라. 조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변경(제6조 ~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제20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제11조 본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평생학습관에서 학습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복사 신청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4. 평생학습관에서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사의 자격과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강사의 자격”으로 한다.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사 용 시 설 :
- 사 용 자 명 :
- 사 용 목 적 :

사 용 료 납부확인	영수증번호	납부일자	비고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복사 신청서

일련 번호	신 청 자		자 료 명	복 사 용 지			금 액 (원)
	성 명	주 소		규격	단가	매수	
계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학습 자료를 복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주소					
	연락처	자택		E-mail		
		사무실				
휴대폰						
최종학력	수료·졸업(전공분야 :)					
현직/주요경력	○ ○					
강의 교과목	○ 강의과목 : ○ 강좌명 :					
희망 강의료	○ 강의료 산출내역 : (근거 :)					
강의할 내용	○ ○ ※ 강의 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의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및 경력 조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복구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관 명칭 및 위치 변경, 실무협의회 위원수 변경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제3조, 제4조, 제10조~제15조, 제20조, 제21조)
- 나.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개정(제5조)
- 다. 평생학습관 위치 변경(제10조)
- 라. 강사의 자격기준 개정(제20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8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별도의 추천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
사 등
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⑥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대관 사용허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운영 규정 삭제(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 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관련 내용 정비(제5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9.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29-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650-1	2021-09-09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9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80-8	2021-09-09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2길 18-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14-6	2021-09-09	건축물 멸실	

수양버들(양정)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차량, 시설물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명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CCTV 설치
2. 시행청 : 울산광역시 복구 교통행정과
3. 행정예고 내용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장소 안내

시설명(주소)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울산 복구 양정동 542-9)	주차장 내부	4	24시간 촬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9. 3. ~ 9. 23.(20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2층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83
 - F A X : 052) 241 - 786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 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호선,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정동 4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사업
 - 나. 명 칭: 울산양정초등학교 일원(소로3-231, 소로1-3)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노선명)	규 모		사업면적
		폭(m)	길이(m)	
도로	소로3-231호선	6.0	341.0	당초 : 6,673.0m ²
도로	소로1-3호선	9.0	40.0	변경 : 6,876.8m 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0. 6. 18.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반·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 간 (2021. 9. 23.까지)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와 소유권 외의 권리 등 명세(변경)

공사명: 양정동 소3-231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양정동	803-1	도	411.5	411.5		울산광역시 북구				
2	양정동	802-1	대	158.1	158.1	양정OOOO O2차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3	양정동	산104-8	임	10	10	씨OOOO주 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시 영등포구		압류	
								영등포 세무서		압류	
								울산광역시 북구		압류	
4	양정동	산104-13	임	869	869	류OO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동작세무서		근저당권	
5	양정동	470-8	임	259	259		울산광역시 교육감				
6	양정동	470-7	임	94	94		울산광역시 교육감				
7	양정동	산101-9	임	554	554	문OO씨OO O파문회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지상권	
8	양정동	470-9	임	7	7		울산광역시 교육감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	양정동	470-2	임	133	133		울산광역시 교육감				
10	양정동	산102-1	임	36	36	이영백	사정				사정
11	양정동	산101-10	임	79	79	문OO씨OO O파문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지상권	
12	양정동	산100-6	임	695	695	김OO	울산 북구 신천동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권	
13	양정동	484-136	대	3	3	유OO	울산 중구 양정동				
14	양정동	484-134	도	215	215		울산광역시 북구				
15	양정동	484-129	도	9	9	한OO	울산 중구 양정동				
16	양정동	산100-4	임	2,053	2,053	김OO	울산 북구 신천동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권	
17	양정동	산100-2	임	7	7		산림청				
18	양정동	산98-4	임	854	854	이OO	울산 중구 학성1길	울산광역시 북구		압류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구분지상권	
								한OO	울산 중구 학성1길	근저당권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9	양정동	514-17	임	93	93	최OO	울산 동구 문채7길				
20	양정동	514-18	대	93	93		울산광역시 북구				
21	양정동	514-21	대	13	13	최OO	울산 동구 문채7길				
22	양정동	776-46	천	4.9	4.9		건설부				
23	양정동	776-47	잡	226.3	226.3		울산광역시				
계				6,876.8	6,876.8						

【붙임】

의견서

『울산양정초등학교 일원(소로3-231, 소로1-3) 도로개설공사』

1.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 . .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